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 319호

2025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2025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 사항 -

< 2025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주요사항 >

1. 신청·접수 및 평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분야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
현장적용	5월 17일 ~ 6월 16일	6~7월	7월

※신청·접수 상황에 따라 전체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2. 기술 실중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실증기능한 제조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 필수입니다.
- 3. 별첨의 기술품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접수하시기 바라며,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7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기타: 3책5공 적용, 졸업제 적용 제외 등.

1. 사업 소개

- □ **사업목적**: 스마트제조 3대분야(①첨단제조, ②유연생산, ③현장적용)의 공급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경쟁력 제고
- □ 사업내용: 스마트제조 3대 분야 중 '현장적용' 분야
 - 현장적용 분야: 제조 현장 노하우의 디지털화 및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중심형 기술개발
 - 현장맞춤/안전중심형 설비 적용기술, 경험제조 지식화 적용기술, 사람중심 노동/환경친화 적용기술 등 개발

-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 하에 실증이 가능한 제조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必

□ 지원조건 : 최대 2년, 2.8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지원분야	지원 기간	지원금액	매칭 비율	지원유형
현장적용	2년('25~'26) 이내	2.8억원 이내	국고 75% 이내	품목지정

2.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시행 계획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24년도	'25년도			
	원대상 및 조건	• 스마트제조 공급기술 개발 역량을 보유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기술개발 결과물을 실증 가능한 수요기업과의 컨소시엄 필수	• 좌동			
	접수시기	• 5월	• 5월			
-	중점지원 분야	• 현장적용	• 현장적용			
7	지원조건	• 3년, 4.5억 이내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정부 지원	• 2년, 2.8억 이내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정부 지원			
중점	점 평가사항	• 기술성, 사업성, 선행연구 우수성 및 차별성, 연구역량, 연구윤리 등 평가	• 좌동			
	신청가능 횟수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사업에 해당연도 1개 괴제만 신청 가능 다만 모집차수가 다수인 경우, 탈락과제 (후보고제 포함)는 1회에 한해 재신청 가능 	• 좌동			
	3책5공	• 적용	• 적용			
	청년 의무채용	• 정부지원 <u>5억원 당</u> 청년 1명 의무채용 * 위반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 환수 등 세부 내용은 [붙임4] 참조	• 좌동			
기 타 사	졸업제	• 적용 제외 <'24년 졸업제 기준> - 졸업제 대상사업 확대(중기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 '20년부터 졸업제 사업을 3회 이상 수행한경우 신청 및 지원 불가 - 단, 적용 제외 사업 및 수행 과제 수 산정기준은 반드시 [붙임4] 참조	• 좌동			
항	동시수행 과제 수	• 해당사항 없음	• 동사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를 1개로 제한 * 단, 적용 제외 사업 및 수행 과제 수 산정 기준은 반드시 [붙임2] 참조			
	보안등급 분류	• 해당사항 없음	• 연구개발기관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 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여부를 자체 점검 후 신청(필수) * 세부내용은 [붙임5] 참조			
	보조금법 위반기업 지원제외	• 보조금법 위반기업 지원제외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법에 의해 보조금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인 경우 지원제외됨	• 좌동			

3. '25년 지원내용

- □ (지원규모) '25~'26년 총 12억원 내외(4개 과제 내외)
- □ (지원조건)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 지원과제수, 기간 및 한도는 정부정책 및 예산상황,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분야	개발기간*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유형
현장적용	2년 이내	2.8억원 이내	75% 이내	품목지정형

- * 총 연구개발기간: 2년 이내이며, 사업연도('25~'26) 내에서 설정하여야 함
- ** 지원한도: 과제당 평균지원금액은 약 2.4억원이나, 선정평가결과 및 연도별 예산반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4. 세부과제별 유형

□ 지원분야

- 신청 기업(관)은 [별첨1]의 기술품목서 상세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해당 기술품목 내에서 자유응모 방식으로 과제를 신청
 - * 지원금액(정부지원연구개발비)은 개발기간(2년 이내)동안 지원예정액으로서 향후 정부정책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현장적용분야 기술품목서 >

디니티크			중분류(1개)
대분류			소분류 기술품목(7개)
		사람중심	노동/환경친화 적용기술
	3-	3-3-1	생체신호 수집을 통한 작업자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3-3-2	인체 위험요인에 대한 작업장 환경개선 기술
		3-3-3	현장 작업자 이상 상태 실시간 감지 기술
현장적용		3-3-4	XR 기반 제조현장 작업자 지원 기술
		3-3-5	제조물류 현장 노동환경 개선 기술
		3-3-6	작업효율 제고를 위한 착용형 디바이스 기술
		3-3-7	위험요인·상황 처리를 위한 원격관리 기술

※ 기술품목서 상세내용은 <별첨1> 참조

5. 신청자격 등

□ (신청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스마트제조 공급기술을 보유하고, 동 사업에 주도적 참여하여 기술개발을 진행할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중소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 (공통사항) 기술개발결과물의 실증가능한 제조기업(이하 '수요기업')을 포함하여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수요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 또는 위탁 형태로 기술개발 하고 결과물을 실중·적용 가능한 제조기업(공장등록증명서 보유)
 - ※ 수요기업이 ①중소기업인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 혹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나, ②대·중견기업인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기관특성별 참여가능범위 >

구 분	중소기업	연구기관·대학	대·중견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	0	X	X
공동연구개발기관	0	0	X
위탁연구개발기관	0	0	0

< 추진체계 예시 >

- ① [필쉬주관(중소기업) + [필쉬공동(제조 중소기업(수요기업))
- ② [필쉬주관(중소기업) + [필쉬공동1(제조 중소기업(수요기업)) + [선택공동2(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 ③ [필쉬주관(중소기업) + [필쉬공동1(제조 중소기업(수요기업)) + [선택위탁(기업, 대학, 연구기관)
- ④ [필쉬주관(중소기업) + [필쉬위탁(제조 대중견중소기업(수요기업))
- ⑤ [필쉬주관(중소기업) + [필쉬위탁(제조 대중견중소기업(수요기업)) + [선택공동(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 ⑥ [필쉬주관(중소기업) + [필쉬위탁1(제조 대중견중소기업(수요기업) + [선택위탁2(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 기업(관)은 [붙임2](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반드시 확인
 -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 (3책5공 제도)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음
 -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 3책5공 제도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차서서그지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자	엄어한 1 사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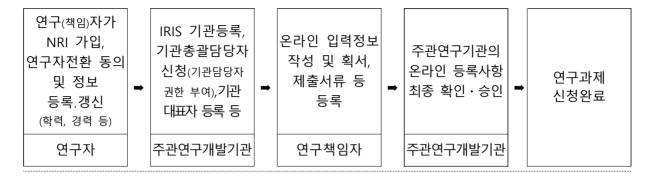
- □ (보안등급 분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연구 개발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 들을 반드시 확인
-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붙임5] 참고
- □ 연구개발기간: 2년 이내
 - 사업기간('25~'26년)을 고려하여 최대 '26.12.31.까지 설정 가능
 - * 1차년도('25년) 연구개발기간은 '25년 7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
 - ** 과제협약기간은 정부정책, 예산상황 및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반드시 총 연구기간에 대한 기술개발목표, 개발방법·내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5. 5. 16.(금) ~ 6. 16.(월)
 - 신청·접수기간 : '25. 5. 17.(토) ~ <u>6. 16.(월) 17:00시까지</u>
 -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 접수 마감일 17:00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17시 이후 신청·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 하므로 17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시 까지만 가능
 -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조
 - 신청방법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 가능하며,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임의 수정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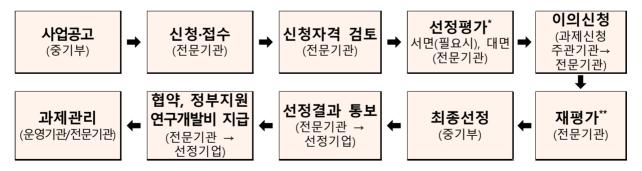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 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과제접수 매뉴얼 참조 : www.iris.go.kr → 로그인 → 업무포탈서비스 → R&D고객센터 → IRIS사용매뉴얼 → [IRIS R&D 업무포털-연구자용] 매뉴얼 다운로드
- ☞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끝나면 화면 우측 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된 연구개발과제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 불가
-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한단	^ - 6			해당시
	연구개발계획서 - (본문1) 5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 익이 발생할 수 있음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확인서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본문1	0	
1	2. 정디기인의 인무실단성이 혈당된다 계획 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2	0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5. 7.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2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0	
3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0	

4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신설)	Ο	
(5)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신설)	Ο	
6	공급-수요기업 간 컨소시엄 확약서	Ο	
7	중소기업 확인서	0	
8	공장등록증명원(수요기업)	0	
	* 실증·적용할 제조현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같이 첨부하여 제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u> </u>	* (개인·법인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0	
9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限)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O	
	* 해당되는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최근 연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및 신용조사		
(10)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Ο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		
	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 (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을 유예		
<u> </u>			0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13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0
	가감점 적용 증빙자료 (가·감점사항은 붙임5 참조)		
<u>14</u>)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0
	* 가점항목에 대해 신청(체크)하지 않고 자료만 제출한 경우 가점부여 불가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 · = · · · · · · · · · · · · · · · ·		

7. 추진절차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신청과제 수나 사업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신청과제 수에 따라 선정평가 과정 중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



-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8. 기술료 징수기준

□ R&D 기술료 징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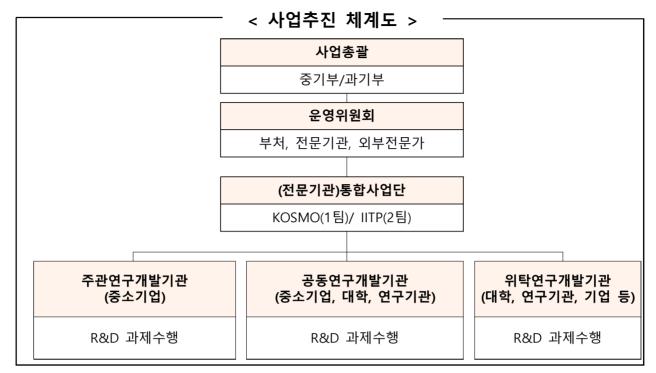
- (납부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 등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 (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고객지원 >> 이용매뉴얼 >> 시스템 이용 매뉴얼 "기술료 매뉴얼" 참고

9.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ㅇ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ㅇ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추진체계



- * 세부과제별 추진체계 상이할 수 있음
-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별 지원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0.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http://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lfqd

[별첨1] (중분류3) 2025년 현장적용분야 기술품목서

[별첨2]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사업 신청서식

[별첨3] 신청·접수 관련 매뉴얼

붙임1 신청 및 접수방법

-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 신청방법: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통합업무 포털서비스(R&D업무포털)→ 사업공고→ 신청공고 목록→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 해당 공고 접수 클릭·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 ※ 신청서류는 해당 공고의 첨부파일을 확인
- ▶ IRIS를 통한 과제접수 전 아래의 필수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과제접수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 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이 필수 입니다.
 -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 (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1]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 ①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 [2] (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주관기관 해당 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과제접수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과제접수 매뉴얼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rightarrow R&D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rightarrow R&D 고객센터 \rightarrow IRIS 사용 매뉴얼 \rightarrow [IRIS R&D업무 포털-연구자용] 전체 매뉴얼 다운로드
 -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입력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 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 가능하며,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임의 수정 불가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요약문, 연구개발계획서 본 문 2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

- ① 1단계: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및 연구자 정보 확인
- ② 2단계: 신청기업의 과제 기본정보 등 과제 상세 정보 입력
-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및 본문2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qo.kr)을 통해 직접 입력
 - * 과제 내용, 연구자 정보, 연구개발비, 개발목표 등을 시스템에 입력
-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로, 신청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된 최종 파일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업로드
- ④ 4단계: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작성했던 내용의 유효성 여부를 점검하고 '최종 확인' 후 제출을 클릭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최종 제출
- 제출된 연구개발과제는 임의 수정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 과제의 제출 권한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만 가능

붙임2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참조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② 신청과제가 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품목서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핵심기술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기타,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 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 예외로 함
 -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 ⑤ 참여제한 여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기관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⑦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①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①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산재·고용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②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또는 국번없이 1357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디딤돌 첫걸음 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는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관련 문의처 >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만, 접수마감일이 3월 31일 이내인 경우에는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시까지 가능]
 -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 ⑧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정보 조회 시 조회 되는 경우
- 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관계인, 자회사 또는 계열사와 컨소시엄 구성 불가(인적 · 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간 포함)

□ 기타 적용사항

- ①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세부사업의 동일 모집차수에 내역사업별 1회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음
- ② R&D 졸업제 : 최대 5회까지만[단, 최근 7년간 3회까지(최근 7년의 시작 연도는 '20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 가능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5회 이상(단, 최근 7년 간 3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수행 횟수는 '20년부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을 한 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과제를 기준으로 산정 함
- ③ 과제 수행 횟수 산정시 '20년부터 '23년까지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한 경우만 산정하고, '24년부터 모든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산정 대상으로 함(단, 공고 당시 졸업제 예외로 명시한 과제는 산정 과제 수에서 제외 함)
 - * `20년부터 `23년까지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및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소부장 강소기업100+과제,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과제, 소부장 함께달리기 과제, 스케일업 팁스 (출연R&D)), 그린벤처프로그램R&D,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및 전략형(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연계, 백신원부자재) 과제 등 공고 당시 졸업제 예외로 명시한 과제는 산정 과제 수에서 제외
- ④ 상기에도 불구하고, '24년부터 협약하여 수행하는 과제는 졸업제 과제 산정 시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용을 달리 함
 -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과제 및 스케일업 팁스 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TIPS 과제 및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과제,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과제,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과제는 졸업제 대상 과제로 계상하지 않음
 -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정공모과제 단위로 수행한 2개의 세부과제, 산학연 Collabo R&D사업의 컨소시엄형 과제에서 총괄기관으로 수행한 2개의 세부과제,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단계별로 연계 지원한 2개의 과제는 그 수행 횟수를 1개로 산정 함(단, 세부과제 또는 단계별 연계 지원을 통해 수행한 과제 수가 1개인 경우에도 1개로 산정)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 경쟁형 과제, 산학연 Collabo R&D 과제 및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과제 등 단계형 지원 과제(1단계 → 2단계)를 2단계 까지 수행한 경우 과제 수행 횟수를 1개로 산정 함(단, 1단계 과제 수행 중에는 과제 수행 횟수를 1개로 계상하고, 2단계 과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선정평가 탈락이 확정된 경우 1단계 과제는 졸업제 대상 과제에서 제외)

< 졸업제 사업 수행 횟수별 단계형 사업 신청 및 수행 가능 여부 >

졸업제 과제 수행 횟수(최근 7년)	단계형 지원사업 신청 가능 여부	1단계 과제 수행 중 다른 졸업제 시업	2단계 탈락시 다른 졸업제 사업
3회	신청 불가	신청 불가	신청 불가
2회	신청 가능	신청 불가	1개 가능
1회	신청 가능	1개 가능	2개 가능

- '19년, '20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정기간 중에 있는 기업(강소기업에서 졸업 및 지정취소된 기업은 제외)이 수행한 중소 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는 졸업제 대상 과제로 계상하지 않음
- ⑤ '25년부터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수는 최대 1개로 한정한다.(단, 졸업제 예외 사업까지 최대 2개까지 동시수행가능하며, 수행 가능한 과제 수 한도는 아래 표를 참조)
 - 수행 중인 과제 수 산정 대상은 '25년부터 협약하는 과제들로 하며, 기술개발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 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주관연구개발기관 으로 수행하는 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수행 중인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정공모과제 단위로 수행하는 2개의 세부과제와 산학연 Collabo R&D사업의 컨소시엄형 과제에서 총괄기관으로 수행한 2개의 세부과제는 수행 중인 과제 수를 1개로 산정

< 표 : 동시에 수행 가능한 과제 수 한도>

'25년이후 신규로 협약하여	추가 수행 가능 과제 수			
수행 중인 과제 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예외 사업		
0711	1개 가능	2개 가능 (졸업제 적용 사업 미선정 시)		
1개 (졸업제 적용 사업)	수행 불가	1개 가능		
1개 (졸업제 예외 사업)	1개 가능	1개 가능 (졸업제 적용 사업 미선정 시)		

⑥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이 경우 주관연구 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만 해당)로 하며,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연구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함

- ⑦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 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작성하여야 함
 -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을 삭감하며, 장비도입을 승인 받은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는 협약 시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2]에 작성해야 할 부분 ※ 시스템 입력사항

- 3)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 (1) 연구시설 · 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 • 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L
·	·								

-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	운영기간	연간운영	비용	현금/현물	전담인력	활용계획	설치장소
한 개발기단당	합니시크리	규 구분	교 6기간	비용	비용	건	수	필증계탁	크시아노
			уу-уу						

- * 1」협약기간 내 운영・활용하는 연구시설・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 및 심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함
-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붙임3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75%(최대 2년, 2.8억원)이내 지원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5년만 확정되었으며, 예산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 과제당 평균 지원금액은 약 2.4억원이나, 선정평가결과 및 연도별 예산반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 연차별 납부
 -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단위: 백만원, %)

78	정부지원	기관부담인	변구개발비(2	25% 이상)	총	개발기간	
구분	연구개발비 (75%이하)	현금	현물	합계	연구개발비		
1차년도	120	4	36	40	160	6개월	
2차년도	120	4	36	40	160	12개월	
합 계	240	8	72	80	320	-	
총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75.0	2.5	22.5	25.0	100.0	-	

- ※ 사업기간 18개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4억원 지원한 경우를 가정, 향후 예산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 연차별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이 충족되어야 하며, 영리기관별 정부연구개발비와 기관 부담연구개발비 비율이 충족되어야 함(위탁기관 제외)

붙임4

청년인력 의무채용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 지원금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 해야 함
 - * 예시) 1.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 2. 영리기관 두 개 기업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 A가 7억원, B가 8억원으로 기업 신청금액 합계가 15억원인 경우, 2개 기업이 논의하여 3명 채용해야 함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과제수행기간 동안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
 -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신규채용 시점)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정규직)
 -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실적젂걲

-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또는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계상금액 전액(既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함
-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조사 등 청년 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조정
 - ** 예시)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적용 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5억원 이상 지원받는 중소기업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구 분	기 준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계속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 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0 실적점검

-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또는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요건 미충족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 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붙임5 보안등급 분류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고, 점검표는 연구개발계획서의 붙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과제 분류 기준(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

관련 규정	구분
혁신법 시행령	(1)「방위사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
제45조제1항제1호	과제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가목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혁신법 시행령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제45조제1항제2호나목	미래핵심기술
혁신법 시행령	(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제45조제1항제2호다목	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혁신법 시행령	(5)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제45조제1항제2호라목	필요한 기술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	(6) 그 밖에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자체점검은 본 공고문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계획서(본문1)의 [붙임] 3. 신청과제 보안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에 따라 점검
- 점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표시

< 연구개발계획서 보안등급 표시 >

연구개발계	획서	[] 신청용 [] 협약용		일반[보안등급], 보안[✓]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이하 생략>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의무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보안과제로 지정될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의무 등은 [붙임9]「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을 반드시 확인

□ 보안듕급은 신청 당시와 달라질 수 있음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 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연구개발기관은 자체점검 결과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붙임9]「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을 반드시 확인

붙임6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선정평가 방법

- (서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역량, 파급효과 등을 종합평가
 -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가능(이 경우, 대면평가로 통합하여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사업계획	1. 사업목적과의	1-1 사업 목적 및 세부과제 신청 자격의 부합성				
	부합성	1-2 품목서와의 부합성				
필수사항 검토	2. 유사.중복성	2-1 기생산 제품과의 유사.중복성				
	2. 규사.중축경	2-2 기개발 지원과제와의 유사.중복성				
		3-1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차별성				
	3. 기술성 항목	3-2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3-3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및 기술유출 방지대책의 적정성				
	4. 사업성 항목	4-1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계획	5. 기술개발역량	5-1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R&D수행 경험 및 역량 등				
세부검토		5-2 연구윤리 -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이력,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 제한 이력 등				
		5-3 공급-수요기업 간 협업계획 적정성, 구체성				
	6. 파급효과	6-1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0. 핍포피	6-2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7. 자금집행계획	7-1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 (대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적정성, 사업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서면평가 생략 시, 사업계획 필수사항 검토 등 서면평가 항목은 대면평가 시에 통합 검토 예정
 - ** 가·감점은 대면평가 시 적용

구분	평가지표	평가요소			
	기술개발 방향의 적정성	· 기술개발 목표, 내용의 수준, 구체성 및 정부지원필요성			
기술성	기술개발 접근 방법의 적정성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 결과의 검증 방법 및 계획의 적정성			
	기술개발 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	·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사업화 계획의 가능성		·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와 전략, 방법, 일정, 변수 대응의 적정성과 기대 효과의 실현 가능성			
7186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적 활용 가능성	·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 선행연구개발 이력(기관 자체 R&D, 국가지원R&D) · 본 과제의 선행연구개발 결과 활용, 이전 국가지원R&E 과제와의 차별성			
		· 연구개발역량			
	기술개발역량	· 연구윤리			
		· 공급-수요기업 간 협업계획			
파급효과		·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자금집행계획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 **(선정기준)**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성 > 사업성 >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 기술개발 보유역량수준 > 자금집행계획 > 가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붙임7

기타 사항

□ 기술료 징수기준

- o (납부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 등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 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 시스템사용: www.iris.go.kr >>알림고객>>자료실>>IRIS사용메뉴얼>>온라인메뉴얼>>"기술료" 검색>>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메뉴얼" 참고
 - * 법령확인: www.iris.go.kr >>알림고객>>자료실>>국가R&D법령.지침>>"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 "검색>>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붙임8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증빙서류)

○ (가점)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대사항별 가점을 고려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 (단, 공통가점 중 성과창출 강화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공통가점 >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 최종평가 결과 '우수' 판정 통보 시점의 연구책임자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성과창출 강화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R&D우수성과 50선'에 선정 되었으나, 재포상 금지 기간에 해당하여 장관 포상을 받지 않은 기업 포함	2점	표창장 등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R&D 우수 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2점	표창장 등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 완료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조기 완납한 기업이 신청한 과제 * 조기완납 기준: 기술료 납부 1~3차년도 납부기한까지 기술료 상한금액을 완납한 경우 ** 단, 기술료 상한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	1점	조기완납기업 확인서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여성기업법」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생태계 보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근거하여 지정된 지역 소재 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지역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및「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과제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 임치를 정상적 으로 진행한 경우	l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증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 최종평가 결과 '우수' 판정 통보 시점의 연구책임자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성과창출 강화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 *중소기업R&D우수성과 50선에 선정 되었으나, 재포상 금지 기간에 해당하여 장관 포상을 받지 않은 기업 포함	2점	표창장 등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R&D 우수 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2점	표창장 등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 완료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조기 완납한 기업이 신청한 과제 * 조기완납 기준: 기술료 납부 1~3차년도 납부기한까지 기술료 상한금액을 완납한 경우 ** 단, 기술료 상한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	1점	조기완납기업 확인서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여성기업법」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생태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하여 지정된 지역 소재 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지역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등)
보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 법」제10조 및「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 정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과 제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 임치를 정 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1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증

^{* &#}x27;중소기업R&D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기업은 상기 가점 외에 선정평가시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지표"점수를 최고점으로 부여함(단, 선행연구와 중복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동 지표 활용 여부 및 점수배점은 사업별로 달라질 수 있음)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1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학인 확인

 (유의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 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임·직원
- 2.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연구개발 기관"이라 한다) 및 참여연구원
- 3. 기술개발사업의 기획, 신규, 중간, 최종, 성과활용 평가 등을 위한 사업별 평가위원회 참여자
- 4. 기타 기술개발사업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술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보안규정을 마련하였을 경우 해당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연구개발과제 보안과제 분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가연구 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연구 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지정·해제하는 등 분류가 필요할 때에는 검토를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 분야 및 보안업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안과 제분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를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 보안과제 여부를 재분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보안과제로 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 보안과제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하거나 해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련 정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한다.
- 1. 보안과제명
- 2.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 3. 보안과제 분류 또는 해제 사유
- 제5조(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 수립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운영요령 제45조제4항에 따른 보안대책(이하 "연구기관보안대책"이라 한다.)으로써 별표1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주관 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을 통일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따르도록 한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의하여 자체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 제6조(연구보안책임자 지정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 중에서 제5조에 따른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연구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그 밖에 연구보안책임자의 지정절차·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따른 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 정한다.
- 제7조(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 내에 연구보안심의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 1. 연구기관보안대책의 수립·변경(연구보안에 관한 자체규정의 제·개정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 2. 혁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 3. 혁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에 관한 자체점검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 4. 제9조에 따른 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에 관한 사항
 - 5. 제10조에 따른 외국 연구자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
 - 6.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 7. 연구기관보안대책을 위반한 연구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 8. 보안과제 참여 연구자에 대한 보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보안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관보안 대책으로 정한다.
- 제8조(보안교육 및 보안서약)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할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이 지침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 사항
 - 2.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 사항
 - 3.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 4.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보안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연구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안서약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소속 연구자와 기타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히 보안상 필요한 경우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 등) ①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 단체 또는 외국인 등(본사와 지사의 소재가 다를 때에는 본사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과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접촉(연구자가 상호작용하는 경우 또는 특정하여 유의미한 정도로 접촉이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접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촉 일시・장소・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재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 (퇴직으로 소속기관이 없거나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 (퇴직으로 소속기관이 없거나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한 사항을 보고 및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
- 제10조(외국 연구자 등의 보안과제 참여 등) ① 보안과제에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참여는 내국인을 통한 목적달성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에 관하여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려거나 이들에게 연구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를 승인하려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 연구보안심의회는 외국인의 보안과제에의 기여 가능성, 기술격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외국에의 기술 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었거나 제3항에 따라 보안과제에 외국인을 참여시킨 경우 해당 사항이 발생하고 1개월 이내에 해당 보안과제에서 외국 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 연구 등을 위한 협약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또한 참여 외국인의 신상 및 과제 참여 범위, 과제 관련 정보 접근 권한의 범위 등의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안등급 표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 수행과정에서 산출되는 문서와 다양한 형식의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등급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라 보안등급의 구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보안등급을 정하기 어려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구분을 준용할 수 있다.

- 1. I 급: 유출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
- 2. Ⅱ급: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 3. Ⅲ급: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 사항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문서의 종류와 보안등급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 정한다.
- 제12조(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보안수당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요령 제45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보안실태 점검을 계획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 실태 점검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연구기관보안대책의 수립·시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 2. 이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 3.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 4.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요령 제45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할 때에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4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안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안사고 경위 조사를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다.

- 1. 조사방식(서면 또는 현장) 및 조사시기
- 2.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
- 3. 조사반 구성
-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 제15조(연구개발결과에 따른 보안과제 분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개발결과에 따라 보안 과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운영요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할 때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한 보안과제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했을 때 보안과제로의 분류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해당 보안과제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 없이 보안과제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제4조제4항에 따라 보고 및 통보한다.
- 제16조(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실시) ① 보안과제를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를 협약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기관은 그 성과의 소유권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로부터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국내의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전받는 기관이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적용받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때 제4조부터 제16조의 '연구개발기관'은 성과를 이전받는 기관으로 본다. 다만 외국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다른 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외국기업 또는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7조(비공개 연구개발성과에의 준용) 이 대책은 혁신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1호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성과에 대해서도 준용하여 적용한다. 단, 제4조 및 제12조는 적용하지 않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비공개를 요청할 때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제9조와 제10조, 제14조, 제16조의 적용을 완화하거나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권한의 대행)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보안과제의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관련 보안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4조, 제9조 및 제10조, 제15조의 사무를 보안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당해 과제의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하며, 제13조, 제14조, 제16조까지의 사무는 필요시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할수 있다.
 -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등 필요시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활용할 수 있다.
 - ② 운영요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전문기관으로서 제4조의 사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의 관리를 전문기관이 대행하고 있는 경우 보안과제분류위원회는 전문기관에 두어 운영한다.
- 제19조 (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연구기관보안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5조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 가.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 · 운영 방법, 심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 나. 제17조 비공개연구성과에 보안대책 (보안대책 적용의 범위)
- 다. 연구개발기관 내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관리를 담당하는 연구보안 책임자 지정, 연구보안책임자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 라. 보안 우수자 및 보안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기준
- 마. 혁신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조치 절차
- 바. 소속 직원의 보안교육 이수 의무에 관한 사항
 - ※.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 우대사항 및 의무사항 위반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과 연구성과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핵심기술 판정 필요성과 후속조치 등
- 사.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실시에 대한 사항
- 2. 보안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관리
 - 가. 참여연구자의 연구기관보안대책 위반 시 징계에 관한 사항
 - 나. 퇴직하였거나 퇴직 예정인 자가 반출 또는 반출 예정인 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다. 참여연구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라. 보안과제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적이 있는 연구자의 외국 정부·기관·단체 접촉시 보고 및 외국 정부·기관·단체와의 연구 승인 등에 관련된 절차 및 형식 등 제반사항
- 3.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 가. 보안등급 표기가 필요한 문서 및 데이터의 종류
 - 나. 연구개발성과의 대외 공개 및 제공 시 사전신고 등 확인절차
- 4. 연구시설 관리
 - 가. 보안과제 수행에 사용된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 매체에 대한 출입 절차

- 나. 연구개발기관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터 등 장비 등의 설치·운용
- 다.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 라. 연구실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출입권한 차등화의 방법·기준, 출입현황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마. 외부인 및 외부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보안과제 관련 연구시설의 내부 출입통제 조치에 관련된 사항
- 바.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에 관련된 사항

5. 정보통신망 관리

- 가. 보안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정보통신망 관리 조치
 - 1)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보안 장비의 설치·운영
 - 2) 연구개발기관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3)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4) 정보시스템 사용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나. 보안과제에 대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강화된 정보통신망 관리 조치
 - 1)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2) 내부망의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3) 정보통신 매체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외부 자료 전송 시 사전신고 등 보안조치
 - 4) 비인가 정보통신매체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 5) 정보통신매체 폐기 및 외부 이관시 보안조치에 관련된 사항
 - 6) 직책 및 업무에 따른 각종 전자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 이외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이 필요시 추가적인 보안대책을 수립한다.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연구개발기관용) - 예시

본인은 "_____"과제 개발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비밀에 대해 과제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연구개발기관장 또는 전문기관장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2. 본 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 3. 본 과제가 완료되거나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제1항 및 제2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 4. 또한 퇴직시 본인은 직무상 지득한 핵심기술 및 정보, 과학기술정보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00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성명: (인)

20 . . .

000 귀하